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78
------	------

발의일자 : 2025. 1. 23.

발 의 자 :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립 지원과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변경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나. 수집인의 자립과 복지 강화를 위한 연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다. 그 밖의 조례 체계를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2025. 2. 4. ~ 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지원내용)”을“(비용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연계·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2.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u>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u></p> <p><신설></p> <p>3. (생략)</p> <p><신설></p>	<p>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u></p> <p>3. <u>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7조(연계·지원) ① <u>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수집인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u></p>

제7조 · 제8조 (생략)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2.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제8조 · 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9.] [(제정) 2021.09.29. 조례 제12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210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